

예 산 총 칙

제1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
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1,002,805,941	30,084,174
일반회계	913,311,132	27,399,333
특별회계	89,494,809	2,684,841
기타특별회계	13,165,650	394,967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사업특별회계 • 교통사업특별회계 •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• 자원순환특별회계 •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8,993 8,852,489 4,189,838 25,630 18,700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,369 265,574 125,695 768 561
공기업특별회계	76,329,159	2,289,874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 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 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3,121,154 51,147,005 2,061,000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93,634 1,534,410 61,830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750,338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
45,400,000천원으로 한다.